

# 부 산 가 정 법 원

## 판 결

사 건 2019드단210853(본소) 이혼  
2019드단214558(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피고(반소원고) 을  
변 론 종 결 2020. 4. 7.  
판 결 선 고 2020. 5. 12.

## 주 문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과거 양육비로 1억 9,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아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3. 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 미용실 운영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견,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등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있었다. 원고는 미용실을 하던 피고가 일이 바쁘다며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원고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바깥으로만 돌며 가정에 소홀하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었다.

다. 원고는 1998년경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자 집을 나갔고,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다 귀국하여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다.

라.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2002. 9. 11.경 30만 원, 2003년경 290만 원, 2005년경 610만 원, 2006년경 675만 원, 2007. 1.부터 2009. 2.경까지 월 65만 원씩, 그 다음달부터 2014. 10.경까지 월 100만 원씩, 그 다음달부터 2018. 5.경까지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그 다음달부터 2019. 11. 5.경까지 월 20만 원씩 이체하는 등 합계 194,000,000원 상당(정기금 외에 추가 지급액도 다수 있음)을 지급하였는데, 월 평균 지급액은 95만 원 상당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취지

## 2. 본소 이혼과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청구 : 이유 없음

나.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반소 위자료 청구 :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판단근거]

○ 혼인관계의 파탄 및 파탄시기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원고와 피고가 1998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별거 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별거 시기, 원고가 2019. 8.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2019. 11. 1.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사진(을1)을 제출하였으나, 그 촬영시점은 2019. 11. 1.경으

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다른 여성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원고는 혼인생활 중 다양한 사유로 피고와 갈등을 빚던 중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피고에게 맡겨둔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혼인관계의 파탄 및 파탄시기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위자료 판단 : 원고의 유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반소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둘째 자녀의 출산(1997년) 이후부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때로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계산한 양육비 합계 1억 9,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 별거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2002. 9. 11.경 30만 원, 2003년경 290만 원, 2005년경 610만 원, 2006년경 675만 원, 2007. 1. 부터 2009. 2.경까지 월 65만 원씩, 그 다음달부터 2014. 10.경까지 월 100만 원씩, 그 다음달부터 2018. 5.경까지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그 다음달부터 2019. 11. 5. 경까지 월 20만 원씩 이체하는 등 합계 194,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월 평균 지급액이 95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비록 원고가 1998년경부터 2002년경 사이에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원고가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해온 점, 피고도 미용실을 운영하며 경제적 수입이 있었던 점, 피고의 양육기간 중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통상의 양육비 액수, 과거의 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부담토록 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는 점,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현재 자녀들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소득과 그 입증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정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어 기각한다.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